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행정조치 발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①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, ②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28일

대전광역시장

1.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 집합제한 행정조치

- 1) 처분대상 :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
- 2) 처분당사자 : 사업주·책임자
- 3) 처분내용 : 24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,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허용
- 4) 처분근거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- 5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- 6) 처분기간 : 2020. 8. 30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- 7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30. 00:00부터

2.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

- 1) 처분대상 : 수영장, 키즈카페, 스터디카페,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

* 8. 23.(일) 행정조치 처분된 다중이용시설 12종 이외에 4종 추가

<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 >

▲학원 ▲오락실 ▲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200㎡ 이상) ▲워터파크 ▲종교시설 ▲공연장
▲실내 결혼식장 ▲영화관 ▲목욕탕·사우나 ▲실내체육시설 ▲멀티방·DVD방 ▲장례식장
▲수영장 ▲키즈카페 ▲스터디카페 ▲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

2) 처분당사자 : 사업주·책임자 및 이용자

3)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

< 핵심 방역수칙 >

사업주·책임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

4) 처분근거

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
5) 처분사유 :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6) 처분기간 : 2020. 8. 30.(일) 00:00 ~ 2020. 9. 6.(일) 24:00

7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30. 00:00부터

3. 기 타

-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